

# 건해산물 위(수)탁 판매 약정서

상호(단체)명		대표자 (출하자)명		*출하인 코드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계통구분	①생산자 ②산지중도매인 ③산지유통인
자택 주소					
핸드폰 번호		사무실 전화		팩스 번호	
이메일		주 출하품목		산지유통인 등록번호	

서울건해산물(주)를“서울건해”이라 칭하고, 위 출하자를“출하인”이라 칭하여 건해산물 위(수)탁 판매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지정위탁 판매인)**“출하인”은“출하인”이 출하하는 건해산물(이하“위탁물품”이라 한다)을“서울건해”에게 위탁판매하기로 하고“서울건해”는 이를 수락한다.

**제2조 (보관책임)**“서울건해”는“출하인”의 위탁물품에 대하여 인수 할 때로부터 판매 시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다만 이에 관련한 보관료, 운임, 상하차비 등 제 비용은“출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판매관리)**

1. 위탁된 물품이 부패, 오염, 이물질 혼입 또는“출하인”이 제시한 판매가와 시세 차이 등 특별한사유로 인해 장기간 판매 보류되어 당해 물품을 판매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서울건해”는“출하인”에게 통보하여 반품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상당대기물품의 보관은 3개월을 경과 할 수 없다.

2. 단, 해태출하“출하인”은 햇김, 화입 김 경매 교체시기를 맞아“서울건해”의 원활한 경매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고물품의 입고 일에 관계없이 경매장의 일체 정리를 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판매대금 정산)**

1. 위탁물품에 대하여“서울건해”는“출하인”이 요구하는 적정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은“출하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판매대금에 대하여 “출하인”이 요구할 경우 은행구좌를 통하여 송금할 수 있다.

3.“출하인”은“출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판매대금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4. 2항과 3항의 경우에“출하인”은 “서울건해”에게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금수령 때 마다 본 약정서에 날인된 인감 또는“서울건해”에게 별도로 제출된 인감(사용인감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수수료)**“출하인”은“서울건해”에게 위탁판매 수수료로 판매대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계산서 발급)**“서울건해”는 위탁물품에 따른 수수료계산서를 월1회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출하인”에게 발급한다.

**제7조(출하장려금 등의 지급)** “서울건해”는 회사 내 별도 기준에 의거하여 “출하인”에 대하여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하손실보전금 등의 지급)**“서울건해”는“출하인”의 출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하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약정기간)** 본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1개년으로 하며, 쌍방간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1. “서울건해”는 “출하인”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시하며 최초 출하약

정 가입시 회원식별 및 출하약정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 ①성명(출하자,단체) ②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④핸드폰, 전화 및 팩스번호 ⑤이메일 ⑥송금계좌번호
- ⑦출하자신고번호 ⑧산지유통인등록번호

2. “서울건해”는 “출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출하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하약정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건해산물 위탁판매약정서를 체결하는 때에 “출하인”이 동의한 것으로 한다.

4. “서울건해”는 “출하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출하인”의 사전 동의 없이 필요한 용도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출하인”은 “서울건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서울건해”는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6.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본 약정 제9조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연장기간도 포함한다.

**제11조 (출하자 대행 신고)**“출하인”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출하자 신고를 직접 하거나 “서울건해”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본 약정서로 대체한다.

**제12조 (기타)**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위 각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서울건해”(수탁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대표전화: 02)407-7871~6 FAX: 02-407-6858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정 근 (인)

20	년	월	일	“출하인”(위탁자) 대표자(법인)명:	(인)
<b>제출서류</b> ①생산자: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어업허가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도장 ②산지중도매인: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지중도매인확인증 1부, 통장사본 1부, 도장 ③산지유통인: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지유통인 등록증 사본 1부, 도장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통장 사본 1부, 법인(사용)인감도장 지참					